

(OJ L 428, 18.12.2020, p. 5)

다음에 의해 수정됨:

## 공식 저널

No

페이지

날짜

▶ M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3/2911 2023년 10월 16일 L 2911

1

22.12.2023



## 위원회 위임 규정(EU) 2020/2146

2020년 9월 2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예외적 생산에 관한 규정(EU) 2018/848을 보완합니다.

### 유기농 생산의 규칙

(EEA와 관련된 텍스트)

#### 제1조

##### 재난 상황 인식

1. 규정 (EU) 2018/848의 제22조(1)항에 언급된 예외적 생산 규칙의 목적을 위해, '악조건의 기후 현상', '동물 질병', '환경 사고', '자연 재해' 또는 '대재앙적 사건'에서 비롯된 상황이 대재앙적 상황으로 간주되려면, 상황이 발생한 회원국이 내린 공식 결정에 의해 대재앙적 상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재난 상황이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개별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공식 결정은 해당 지역 또는 운영자를 언급해야 합니다.

#### 제2조

##### 면제에 대한 조건

1. 제1조에 언급된 공식 결정에 따라, 유능한 당국은 해당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사업자를 확인하거나 해당 개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제3조에 명시된 관련 면제와 관련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면제와 조건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a) 제한된 기간 동안, 필요한 기간을 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을 넘지 아니하고, 해당 면제 조항의 적용일 이전에 수행된 유기 생산을 계속 하거나 재개할 수 있다.

(b) 특별히 영향을 받는 생산 유형 또는 해당되는 경우 토지 소포와 관련하여;

(c) 해당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관련 유기 농장 운영자에게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개인 운영자에게만.

2. 제1항에 언급된 면제의 적용은 면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규정(EU) 2018/848 제35조에 언급된 인증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운영자 또는 운영자들이 면제가 부여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3조

## 규정(EU) 2018/848의 특정 면제

1. 규정 (EU) 2018/848 부속서 II 제1부 1.8.1항의 derogation에 따라, 식물 생식 재료가 아닌 식물 및 식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유기 또는 전환 중 식물 생식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유기 식물 생식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속서 제1부 1.8.5.3항 및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속서 제1부 1.7항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규정 (EU) 2018/848 부속서 II 제2부 1.3.1항의 derogation에 따라, 동물 사망률이 높고 유기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속서 II 제2부 1.2.2항에 명시된 각각의 전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리 또는 양 떼를 비유기 동물로 교체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위 문단이 적용됩니다. *mutatis mutandis* 꿀벌 및 기타 곤충의 생산에 사용됩니다.

3. 규정 (EU) 2018/848 부속서 II 제2부 1.4.1(b) 항목의 면제에 따라 사료 생산이 손실되거나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 가축은 유기 사료 또는 전환 사료 대신 비유기 사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4. (EU) 2018/848 규정 부속서 II 제2부 1.4.2.1, 1.6.3 및 1.6.4항의 derogation을 통해 가축 생산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규정 제14조 (3)항에 따라 채택된 시행 조치에 명시된 유기 토지의 방목, 건물 내 가축 밀도 및 실내 및 실외 공간의 최소 표면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규정 (EU) 2018/848의 부록 II 제2부 1.9.1.1(f) 항목의 derogation에 따라 사료 생산이 중단되거나 제한이 부과될 때 일일 배급량에서 조사료, 신선하거나 건조한 사료 또는 사일리지로 구성된 건조 물질의 백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발달의 다양한 단계에서의 영양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 규정 (EU) 2018/848의 부록 II 제2부 1.9.6.2(b) 항목의 예외에 따라 기후 조건 이외의 다른 이유로 군집의 생존이 위협받는 경우, 꿀벌 군집에 유기 꿀, 유기 꽃가루, 유기 설탕 시럽 또는 유기 설탕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규정 (EU) 2018/848 부록 II 제2부 1.9.6.5(a) 및 (c) 항목의 면제를 통해, 군집의 생존이 위협에 처한 경우, 벌 군집은 양봉장 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B

8. 규정 (EU) 2018/848의 부속서 II 제3부 3.1.2.1(a) 항목의 derogation에 따라, 양식어류의 사망률이 높고 유기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양식어류 재고는 비유기적으로 사육된 동물로 갱신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 주기의 후반 2/3는 유기 관리 하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9. 규정 (EU) 2018/848의 제24조(9)에 따라 채택된 시행령의 면제 및 특히 유기농 생산에서 허가된 제품 및 물질 사용 조건을 확립함으로써, 유기농 포도의 위생 상태로 인해 와인메이커가 비슷한 최종 제품을 얻기 위해 이전 연도보다 더 많은 이산화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위임 규정 (EU) 2019/934의 별지 I의 B부에 명시된 최대 함량까지 와인 부문의 제품을 만드는 데 이산화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 모니터링 및 보고

1. 회원국은 본 규정에 따라 자국의 유관 당국이 허가한 면제 사항을 위원회가 제공하는 전자적 문서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2. 허가된 면제가 적용되는 모든 운영자는 허가된 면제와 관련된 서류 증거와 면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면제의 사용에 대한 서류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3. 회원국의 유관 당국 또는 적절한 경우 통제 당국이나 통제 기관은 운영자가 허용된 면제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5조

## 발효 및 적용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유럽 연합 공식 저널*.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규정은 전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